

# 아주대학교 공간관리위원회 회칙

## 1장 총칙

## 2장 공간관리위원회 총회

## 3장 중앙공간관리위원회

## 4장 단과대학 공간관리위원회

## 5장 동아리 공간관리위원회

## 6장 공간관리 징계위원회

## 7장 중앙공간관리위원회 위원장

## 8장 공간관리위원회 집행국

## 9장 공간 운영

## 10장 회칙개정

## 1장 총칙

1조 (명칭) 본회는 아주대학교 **학생공간관리위원회**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
2조 (목적)

본회는 자기 단위의 공간 이기주의를 지양하고, 학내에 있는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확충 및 효율적 활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3조 (지위) 본회는 아주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기구이다.

4조 (회원의 자격)

- ① 총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, 단대학생회에서는 해당 **단위의** 부회장이 된다.
- ② 공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각 학부(학과), 반 학생회에서는 해당 학생회의 회장이 되며, 회장의 결위 또는 부재 시 부회장이 대신한다.
- ③ 공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앙동아리에서는 해당 동아리의 회장이 되며, 회장의 결위 또는 부재 시 부회장이 대신한다.
- ④ 공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단대 및 학부(학과) **소속** 소학회에 대해서는 해당 소학회의 회장이 되며, 회장의 결위 또는 부재 시 부회장이 대신한다.
- ⑤ 위 단위의 회원이 부재 및 결위 시 해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.

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,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.
-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**부칙**을 준수해야 한다.
- ③ 본회 활동으로 인하여 학교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, 학교 관계 위원회에 **출석하여 발언**을 할 수 있으며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.

6조 (구성) 본회는 제2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공간관리위원회 총회, **중앙공간관리위원회**, 단과대학 공간관리위원회, 동아리 공간관리위원회, 공간관리 징계위원회, 위원장, 집행국을 둔다.

## 2장 공간관리위원회 총회

7조 (지위) **학생공간관리위원회** 총회(이하 총회)는 본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.

8조 (의장)

- ① **총회 의장**은 **중앙공간관리위원회**장이 맡는다.

### 9조 (구성)

- ① 총회의 재적인원은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4조 ③,④항의 회원은 소속 단체의 회장, 부회장 중 1인이 의결권을 가진다.

### 10조 (업무 및 권한) 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과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중앙공간관리위원회에게 보고를 받고 결정한다.

- ① 회칙과 **부칙**을 개정한다.
- ② 중앙공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 전학대회에 이를 보고한다.
- ③ **부칙**에 의거한 결과를 보고를 받고, 이에 따른 공간의 전면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중앙공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- ④ 공간관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학교 측에 요구한다.
- ⑤ 위원장 및 각 자치기구·단체별 **공간관리위원회** 위원장의 불신임 결의한다.
- ⑥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.

### 11조 (소집)

- ① 총회는 학기개시 후부터 정기 전학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의장이 소집해야 하며,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.
- ② 총회는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.
- ③ 총회는 **재적인원 1/5 이상**의 요구가 있거나,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### 12조 (안전 상정 및 공고)

- ① 총회의 본 안건은 중앙공간관리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안전에 대한 심의 후 소집 공고와 함께 안전을 **공고하여야 한다**.
- ② 중앙공간관리위원회는 **총회** 개최 7일 전에 안전 상정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하고, 각 회원이 소속된 학생 **자치기구**에 안전에 관한 공문을 보내야 한다. (임시 **총회** 개최 시 동일.)
- ③ 총회 기타 안건은 총회 전까지 받고, 총회 개최 자리에서 1/3이상이 발의에 동의 했을 경우 안전으로 상정하고 의결한다.

### 13조 (개회 및 의결) 총회의 업무 권한은 다음에 의거하여 의결한다.

- ① 총회는 재적 회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② 재적인원 1/2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제10조 ②,④,⑥항)
- ③ 재적인원 1/2 이상의 출석과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제10조 ①,③항)
- ④ 재적인원 1/3 이상이 발의하고, 재적인원 1/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. (제10조 ⑤항)
- ⑤ 기권표가 찬성·반대의 표차보다 클 경우 재논의 후 재의결한다.
- ⑥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 단, 가·부 동수일 경우에 의결한다

## 3장 중앙공간관리위원회

### 14조 (지위) 중앙공간관리위원회(이하 공관위)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.

### 15조 (구성) 각 단대 학생회의 부회장을 원칙으로 하고 총 11개 단위의 운영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한다.

- ①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, 운영위원의 대표 공간을 제외한 모든 학생 공간을 대표한다.
- ② 동아리연합회 부연합회장이 위원이 되며, 중앙동아리의 공간을 대표한다.
- ③ **단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학생회의 부회장이 위원이 되며, 단과대학의 공간을 대표한다.**
- ④ 각 **단위의** 위원이 참석할 수 없을 시 해당 소속의 운영위원회에서 직선 대표자 1인이 참여할 수 있다.
- ⑤ 각 **단위**의 대표가 부재 또는 결위 시 해당 단위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인 대신한다.

### 16조 (업무 및 권한) 공관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- ① 아주대학교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배치 권한
- ② 회칙 개정 발의
- ③ 총회의 소집 요구 및 총회 본 안건 상정
- ④ 본회의 집행국과 회원을 관리
- ⑤ **부칙**에 따라 학생자치활동 공간에 대한 **활용실태**를 파악
- ⑥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어 **부칙**에 따라 공간사용관련 징계 심의
- ⑦ 미사용 공간의 입방 및 재배치와 퇴실 등 부분적인 공간조정
- ⑧ 학교 당국과 학생자치활동 공간에 대해 협의.
- ⑨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에 요구

### 17조 (소집)

- ① 공관위는 정기 공관위와 임시 공관위로 구분된다.
- ② 정기 공관위는 매주 1 회로 하고, 그 시기는 공관위에서 결정한다.
- ③ 임시 공관위는 위원장의 요구나, 운영위원 1/3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.
- ④ 공관위는 재적인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### 18조 (의결)

- ① 공관위는 재적인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장은 **가·부** 동수인 경우 의결한다.

## 4장 단과대학 공간관리위원회

19조 (지위) 단과대학(이하 단대) 공간관리위원회는 단대의 최고 공간관리기구이다.

20조 (구성)

- ① 단대학생회에서는 해당 학생회의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.
- ② 공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각 학부(학과, 반) 학생회에서는 해당 학생회의 회장이 위원이 된다. (단, 회장의 부재 및 궐위 시 부회장이 대신한다.)
- ③ 위 단위의 회원이 부재 및 궐위 시 해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대신한다.

21조 (회칙)

각 위원회는 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을 가질 수 있다.

22조 (업무 및 권한)

각 위원회는 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를 실시한다.

23조 (징계)

모든 징계 사항은 공간관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## 5장 동아리 공간관리위원회

24조 (지위) 동아리 공간관리위원회는 동아리의 최고 공간관리기구이다.

25조 (구성)

- ① 동아리연합회 부연합회장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- ② 각 중앙동아리에서는 해당 중앙동아리의 회장이 위원이 된다. (단, 회장의 부재 및 궐위 시 부회장이 **대신한다**.)
- ③ 위 단위의 회원이 부재 및 궐위 시 해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대신한다.

26조 (회칙)

해당 위원회는 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을 가질 수 있다.

27조 (업무 및 권한)

해당 위원회는 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를 실시한다. (단, 동아리 공간 배치의 경우 동아리연합회와 학생처의 심사로 진행이 된다.)

## 6장 공간관리 징계위원회

28조 (지위) 공간관리 징계위원회(이하 징계위원회)는 자치공간사용과 관련한 징계 결정의 최고 운영기구이다.

29조 (구성) 징계위원회는 중앙공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① 위원장은 중앙공간관리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**중앙공간관리위원**으로 이루어진다.
- ② 각 **단위의 위원**이 참석할 수 없을 시 해당 **단위의** 직선 대표자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1인이 참여할 수 있다.

30조 (기능)

-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단체의 공간사용에 있어서 회칙 및 공간사용약관에 위반된 사항은 무엇인지 심사하고 징계사항을 기록한다.
- ② 징계위원회는 기록된 징계사항을 차기 공관위에 문서화하여 인수인계 할 의무를 가진다.
- ③ 징계대상 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의견이 있을시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, 위원장은 징계 재심사항에 대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31조 (위원장의 책무)

- ①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32조 (회의소집)

-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의 판단 하에 소집하며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징계는 부칙에 따라 집행한다.

33조 (회의록)

-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은 각 위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각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면 회의록에 명기해야 한다.

34조 (의결)

-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인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장은 **가부** 동수인 경우 의결한다.

35조 (공고)

- ① 징계 사항이 결정되면 학교 자유게시판에 게시한다.

36조 (이의제기)

- ① 이의제기는 징계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공간관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
- ②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처리한다.
- ③ 이의제기 처리에 불만이 있을 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(단, 재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.)

## 7장 중앙공간관리위원회 위원장

37조 (지위) 부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총회·공관위·**징계위원회**의 의장 및 집행국의장이 된다.

38조 (임기) 학생회 임기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학생회 선거가 끝나는 동년 12월 마지막일까지로 한다.

39조 (업무 및 권한)

- ① 대외활동에 있어 본회를 대표한다.
- ② 집행국을 임명한다.
- ③ 총회, 공관위, 징계위원회 및 집행국을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.
- ④ 아주대학교 학생총회, **중앙운영위원회**,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40조 (권한대행)

- ① 부총학생회장이 궐위하거나 불신임 결의를 받아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, 총학생회장이 승계한다.
- ②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하거나 불신임 결의를 받아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, 중앙공간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.

## 8장 공간관리위원회 집행국

41조 (지위) 집행국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
42조 (구성) 집행국은 필요시 위원장이 구성 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각 국의 국장 및 부장으로 한다.

43조 (업무 및 권한)

- ① 총회, 공관위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.
- ② 집행국은 공관위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고 총회의 요구 시 출석하여 발언한다.
- ③ 집행국은 제반 활동을 위하여 그에 맞게 원활하게 구성한다.
- ④ 집행국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별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
## 9장 공간 운영

44조(공간 운영의 기본원칙)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에 대하여 사용기간, 목적 및 용도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, 구조 및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 또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.

45조(공간 배정의 원칙과 기준) 공간은 다음 각 단대별 필요성에 따라 분배하며, 필요에 따라 용도, 사용기간 사용주체 변경될 수 있다. (단, 아래의 각 호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.)

1. 공간의 효율성 및 공용성
2. 소학회, 동아리 간의 형평성
3. 관리의 용이성

46조 (공간 사용 조정) 운영 및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배정, 사용기간 및 용도변경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47조 (추가 공간의 사용) 배정된 공간외의 추가 공간이 생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용 용도를 정한다.

48조 (공간의 반납과 회수)

- ① 사용주체는 사용목적의 완성, 사용기간의 종료, 사용자격의 상실 및 중단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.
- ②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공간의 회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49조 (공간의 실태조사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교내 모든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.

50조 (공간 재배치)

- ① 해당 연도 3월 개강 전에 완료한다.
- ② 공간 재배치는 '배분'과 '배치'로 나뉜다.
- ③ (배분)
  1. 배분이란 중앙공간관리위원회에서 전체 학생자치공간의 개수를 각 단위에 일정 개수로 할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2. 배분은 중앙공간관리위원들이 각 단위별 재적 인원, 구성 주체 운영여건 보장, 필요성, 효율성 등에 따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.
  3. 각 단위가 가지고 있는 활동 위치, 각종 환경 등에 따른 특수성 역시 배분 논의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④ (배치)
  1. 배치란 각 단위 공간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된 공간의 사용

주체와 위치를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

2. 공간의 위치는 중앙공간관리위원회에서 논의 후 변경될 수 있다.
3. 각 단위의 구성 주체가 가지고 있는 활동 위치, 각종 환경 등에 따른 특수성 역시 배치 논의에 반영할 수 있다.

⑤ (공고)

1. 자료제출 공고는 해당 연도 2월 첫째 주 이내에 실시를 한다. (단, 중앙동아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)

⑥ (이의제기)

1. 이의제기는 재배치 및 징계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공간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.
- ⑦ 재배치 확정 공고 후 개강일 이전까지 모든 퇴실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개강일 이후 입실 절차가 시작 된다.

## 10장 회칙개정

35조 (발의) 본회의 회칙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위원장의 발의
- ② 공관위 위원 1/2 이상의 발의
- ③ 회원 1/3 이상의 발의

36조 (의결) 회칙 개정 발의시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,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에서 개정발의안에 관한 표결을 제13조 ②항에 의거하여 실시한다.

부칙

1. (발행) 본 회칙은 2007년도 1학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제정되었고,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한다.
2. (시행) 본 회칙은 2007년도 1학기 정기 전학대회 후 공포한다.

부칙

1. (발행) 본 회칙은 2012년도 1학기 정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,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한다.

부칙

1. (발행) 본 회칙은 2013년도 1학기 정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,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.

부칙

1. (발행) 본 회칙은 2015년도 2학기 정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,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.

부칙

1. (발행) 본 회칙은 2016년도 2학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,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.

부칙

1. (발행) 본 회칙은 2017년도 2학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,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.

부칙

1. (발행) 본 회칙은 2018년도 2학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,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.

부칙

1. (발행) 본 회칙은 2019년도 2학기 공간총회에서 개정되었고, 공고와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.